

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주민투표법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,
- 주민투표 제도의 운영 및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(20세 이상 ⇒ 19세 이상) : (안 제3조)
-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 마련 : 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)
 - 생년월일 ⇒ 주민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 - 주소 ⇒ 주소, 거소, 체류지

- 청구인 서명부 열람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규정 마련 :
(안 제10조)

4. 검토의견

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- 안 제3조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,
- 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로, 주소에서 주소, 거소, 체류지로 변경하였으며,
- 안 제10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청구인 서명부 열람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금지조항을 마련한 것으로,
-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주민투표법」(2009년 2월 12일)의 개정
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의 운영 및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투표
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- 그러나 「주민투표법」이 2009년 2월 12일에 개정되었음에도 2년이 지나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붙임 :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